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환경복원 힘 모은다

- 9월 4일 국토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24년 시범사업 후 확대할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9월 4일(월) 체결한다고 밝혔다.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그동안 훼손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복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특히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복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백두대간·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환경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대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 GB 토지매수사업('23년 644억)을 통해 사유지 매수(백두대간·정맥은 50억 내외)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은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금년에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복원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에 착수하여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총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책임자	과 장	박정호 (044-201-3742)
		담당자	사무관	유용일 (044-201-3752)
환경부 <공동>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소영 (044-201-7220)
		담당자	사무관	황의정 (044-201-7224)

□ 검토배경

-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 가치 높은 백두대간·정맥 300미터 이내 훼손된 지역을 체계적 복원·관리하는 부처 간 협업모델 마련

* GB(3,793km²) 내 백두대간·정맥 300m 이내 토지는 242km²로 GB의 6.4%

□ 추진방안

- **(역할분담)** [국토부] 토지매수, [환경부] 자연환경복원
- **(추진절차)** 매수신청토지 분석(국토부·환경부)→ 현장조사 및 사업후보지 선정(환경부·국토부)→ 토지매수(국토부)→ 환경복원사업(환경부)
- **(사업방식)** 국가 직접사업(전문기관 [국립생태원] 위탁)
- **(사업내용)** ①[산림훼손지 복원] 소류습지 조성, 망토군락(외래종 침입 억제), 휘겔컬투어(Hugelkultur) 조성(기후변화에 따른 토양수분 및 지하수 유지 함양 기능) 등
②[탄소흡수·생물다양성 증진] 숲 틈을 확보하여 탄소흡수원 증진수종 식재, 저층림 조성으로 식생구조 다층화, 양서파충류서식지 조성 등
- **(기대효과)** ①도시 내 무분별한 개발압력 차단, ②탄소흡수원 확대 및 생물다양성 증진, ③GBF*목표 달성 기여(target2 전국토 훼손지 30%이상 복원)

*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이행하여야 하는 4개의 전략목표(Goal)와 23개의 실천목표(Target)로 구성

□ 향후계획

- 업무협약(9월) → 토지매수(~12월, 국토부) → 환경복원사업('24~, 환경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이하 '양 부처'라 한다.)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양 부처가 협업하여 훼손지역을 체계적으로 복원관리함으로써 국가 생물다양성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방향) 양 부처는 개발제한구역 내 백두대간 또는 정맥의 주요 핵심 생태축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은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제2조(역할분담) 양 부처는 다음의 역할에 대해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백두대간 또는 정맥의 300m 이내의 매수 신청된 토지 중에서 자연환경복원이 필요가 있는 토지를 환경부와 상호 협의하여 선정 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2. 환경부는 국토부에서 매수한 토지 중 훼손 지역에 대해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제3조(상호협조) 양 부처는 이 협약내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협약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5조(기타사항) 양 부처는 소관 법률상 절차 및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본 협약을 이행한다.

이 협약서는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환경부**
장관 한 화 진

 **국토교통부**
장관 원 희 룡